

시 민

주무관	택시정책팀장	택시물류과장	교통기획관	도시교통실장
최준영	윤정희	김기봉	박종수	05/22 황보연
협 조				

문서번호	택시물류과-20534
결재일자	2020.5.22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방침번호	

「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」
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계획

2020. 5.

도 시 교 통 실
(택시물류과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제형 성	<p>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</p> <p>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수립	<p>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</p> <p>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<p>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과급효과 분석 등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홍보	<p>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기타사항	<p>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</p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
「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」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계획

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최대 피해자인 택시업체에게 경영개선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여 고용유지 및 원활한 택시공급으로 대시민 서비스 유지

1 추진배경 및 근거

추진배경

-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법인택시업체의 운송수입 급격한 감소
 - 코로나19 발생 前 대비 운송수입금 30.7% 감소 ('20.3월 기준)
-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로 급격한 운전자 이직을 최소화하여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택시서비스 유지 필요
 - ('19.12월) 29,922명 → ('20.4월) 24,680명, 5,200여명 감소(17.5%↓)

추진근거

-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7조(재정지원)
-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)
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내지 제23조

추진경위

-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특별 지원 요청 건의('20.3.5, 법인조합)
- 서울 택시업체와 운수종사자 지원 건의('20.4.27, 법인조합)

2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
- 사업주관 :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(대표자-문충석)
- 사업대상 : 법인택시 255개 회사(운수종사자 24,680명)
※ '20. 3. 1.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
- 사업기간 : '20. 5월 ~ '20. 8월(4개월간)
- 사업내용 :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한시적 지원
- 소요예산 : 총 7,404백만 원(전액 시비, 2차 추경시 편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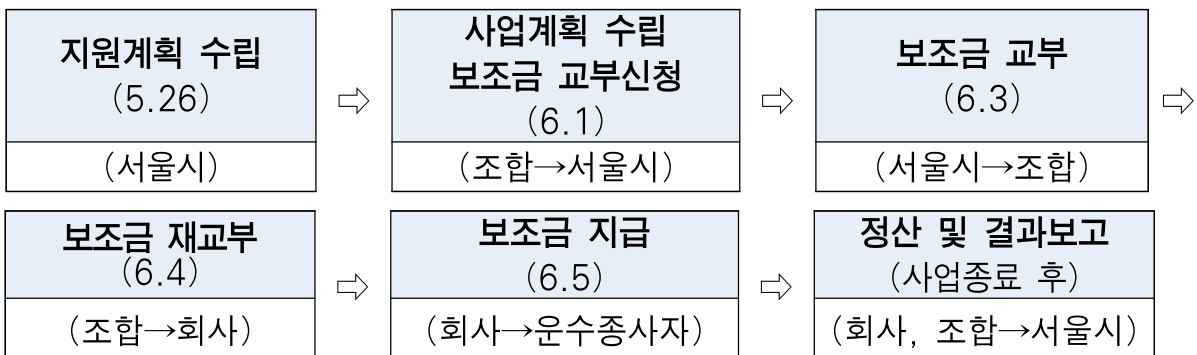
❖ 전액 시비 지원 결정

예산 편성시에는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3:1(30만원:10만원) 매칭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자 부담없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 (제293회 예결위 임시회, '20.5.7.)

3 세부 추진계획

□ 보조금 교부 및 절차

- 교부기관 : 서울특별시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(이사장 : 문충석)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~55조에 의거 법인택시 회사의 대표단체
- 교부 및 시행 절차 (1차 지급 6.5. / 2차 지급 7.5)



□ 보조금 집행 및 정산

- 서울시는 택시조합 보조금 전용계좌로 송금, 조합은 택시업계에 재송금 후 원칙적으로 운수종사자의 계좌에 입금조치
 - 법인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15만원씩 2회에 걸쳐 총 30만원 지원
-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업계에 보조금 교부 집행 후 정산

□ 보조금 지원관리

- 지원된 지방보조금은 법령 및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지출
- 지출 후 반드시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
-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반드시 반납
 - ※ 법령 위반 등이 있을시는 교부결정 취소 등

□ 소요예산 : 총7,404백만원

- 예산과목 : (교통사업 특별회계)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,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,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, 운수업계보조금 (307-09)

4 추진 일정

-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: '20. 5. 30. 이전
-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(1차) : '20. 6. 1. ~
-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(2차) : '20. 7. 1. ~
-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: '20. 8월 말까지

붙임 : 협약서(안) 1부. 끝.